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16회 제2차 정례회(2017.1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
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복지도시위원회
전문위원 김용범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7년 11월 23일(木), 이동주 의원 외 11인

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7년 11월 24일(金)

4. 관련 법령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」

5. 제안이유

도시환경개선 및 녹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녹화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함.

6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용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다. 행위의 제한과 원상회복(안 제8조 ~ 안 제9조)
- 라. 큰키나무 관리의 승인·협의(안 제10조)
- 마. 녹지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(안 제12조 ~ 안 제18조)

7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이동주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

본 안건은 도시의 환경개선 및 녹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녹화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
- 본 조례안은

-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 정의,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,
- 제2장에서는 녹화지원 및 녹화사업에 관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화사업을 지원하였고, 녹화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제3장은 수목 유지관리 의무 및 행위의 제한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수목의 보존과 녹화추진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제4장에서는 녹지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기능, 구성, 회의운영, 위원장 직무, 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,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총 4장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돼 있으며,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